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6월 27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4. 9. 24.) 상정, 심사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024. 11. 27.)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전체회의(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
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 부)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비하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등에 있어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하려는 내용임(안 제26조 단서, 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안 제33조제6호의4, 안 제43조제5항, 안 제69조제1호 본문, 안 제75조제2

항, 안 제8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u>저소득층</u>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임용의 원칙) ----- ----- -----. ----- ----- ----- <u>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u> ----- ----- ----- ----- -----.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② (생략)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u>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u>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 <u>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 기술</u>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신규채용) ① (생략)	제28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② ----- ----- ----- -----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
· 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 13. (생략)

③ 삭제

④·⑤ (생략)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

----- 제
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
1호-----

1. ~ 8. (현행과 같음)

9. -----

과학기술 -----

10. ~ 1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

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3.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 <후단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결격사유)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u>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u> <u>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u>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실형(벌금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u> <u>다.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u> <u>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u> <u>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u>
7.·8. (생략)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④ (생략)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7.·8. (현행과 같음)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3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가.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illegible]

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제71조(휴직)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생략)

③ ~ ⑤ (생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략)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

-----.

2. (현행과 같음)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

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 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 른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
증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실적주의를 임용의 원칙으로
하면서,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채용·승진·전
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
주의 원칙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실적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인사관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조치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로 보임.

참고로, 「공무원임용령」(2024. 1. 1. 시행)은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채용시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규칙」(2024. 1. 1. 시행)은 승진에서 우대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수 기준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 중 다자녀 양육자 우대 관련 사항]

구분	주요 우대 내용
승진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 (기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 (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전보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 (기존)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 (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채용	■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 (기존)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 (개정)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사례]

- **(부산)** 성과상여금 A등급 부여(3자녀 이상 양육 공무원, 부부공무원은 1명만 우대 / 3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8세 이하, 20세 이상은 자녀수에서 제외)
- **(경기)** 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 후 첫 평정시 가점 부여(2자녀 0.7점, 3자녀 1.5점, 1회, 남성도 부여, 부부가 모두 도 소속일 경우 1명만 부여)
- **(충남)** 첫째·둘째 1점, 셋째 1.5점, 넷째 2점을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받는 1·2회차 근평에 각각 부여(부부 각각 부여, 신청 필요)
- **(전북)** 둘째 1점, 셋째 2점, 넷째 이상 3점(20.7.1 출산 이후 2자녀 이상이 된 경우부터 부부 각각 부여)
- **(포항시)** 3자녀 1점, 4자녀 이상 2점 ※ 최대 2점, 부부 각각 부여

현행법상 인사상 우대조치가 이루어지는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은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 또는 집단으로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차원에서 인사상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과학기술진흥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의 경우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공무원 등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2023년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¹⁾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 등 인사 운영에 있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불가피한 입법 조치로 봄.

1)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

현행법 제33조²⁾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임권을 영구 박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³⁾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

3) 국가공무원법(2020헌마1181, 2022. 11. 24 선고/ 2020헌마 1605, 2023.6.29.), 지방공무원법(2020헌마 1605, 2023.6.29..)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 내용(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 ▶ **①다양한 임용예정 직무, ②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원임권을 **③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 충분히 달성 가능
- ▶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024. 5.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더 위헌적인 법적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예외적 결정)

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①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점, ②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범행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았음.

그리고, 단순위헌결정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이 있을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개정시한 2024. 5. 31.)을 하였음.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감안한 입법조치임.

다만, 적정한 임용결격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에 의한 결격기간 및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⁴⁾ 그 밖에 결격사유 간의 체계정합성을 담보하고⁵⁾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⁶⁾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법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봄.

4) 교육공무원의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음.

-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 (중간 생략) … 결격사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9.7.25. 자 2016헌마754).

5) 개정안 제33조제6호의4 나목과 다목의 관계에 있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임용결격 기간의 적용에 있어 불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6) 법무부는 개정안 제33조제6호의4 가목의 “실형”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

참고로, 형법상 자격정지의 최장 기간은 15년⁷⁾이고,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⁸⁾를 살펴보면, 결격기간은 다양하나 최장기간은 20년임.

<결격사유 관련 입법례>

- 체육지도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10년

가 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의 실행”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7) 「형법」 제44조(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8)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중 정서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위헌, 2019헌마813. 2022.9.29.)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 : 아동학대관련범죄(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 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10년, 벌금형은 없음)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아동학대관련범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20년, 벌금형 10년

다.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

현행법 제33조제1호⁹⁾는 “피성년후견인”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¹⁰⁾을 제외하여 국가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

9)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10)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우라도 당연퇴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¹¹⁾는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은 ①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과 비교시 사익 제한 정도가 과도하다는 점, ②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 ③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공익 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것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 내용(2020헌가8, 2022.12.22.)
- 공무원이 <u>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u>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는 것은 <u>과잉금지원칙 위반</u> 으로 위헌
- 현행법상 <u>질병휴직 및 직권면직 제도를</u>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u>잔존능력을 확인·심사</u> 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하는 방안으로도 <u>공무담임권 침해 최소화</u> 가능

라.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현행법 제83조¹²⁾는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

11) 2020헌가8(2022.12.22. 선고)

기관”이라 함)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소속 기관의 장이 현행법에 따라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수사 대상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를 양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사자료에 근거한 징계 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8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이외에 감사원의 조사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감사원의 조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행정응원 및 협조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제 원칙에 따라¹³⁾ 조사·수사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협조의무 규정을

12) 「국가공무원법」 제83조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3) 다수의 입법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개방형직위 지정 간주 규정 삭제

현행법 제28조의4제1항14)은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⑥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해당 직위의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야 하고, 임용자격요건 및 임용기간도 5년의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시 거쳐야 하는 선발시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처 자체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 근무기간도 5년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어 임용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정하여야 하는 개방형직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편임.

<국가 및 지방 개방형직위 운영 현황>

2023.12.31. 기준

구분	국가	지방
개방형직위 수	373개	574개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로도 임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소속기관별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즉시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인사 자율성, 적시성 등 신속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이라는 측면에 편중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방형 직위의 지정 및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반 임기제공무원보다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의 경우 그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두텁게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방형 직위가 무분별하게 감축되는 경우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점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개방형 직위 임기제와 일반 임기제 비교>

구분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고위)공무원
채용		경력경쟁채용(임용)	
근무 기간	국가	5년의 범위(최소 2년 이상)에서 <u>소속 장관이 정한 기간</u> + 성과탁월시 연장 가능	5년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 성과탁월 시 5년(최대 10년)
	지방	5년의 범위(최소 2년 이상)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 + 성과탁월시 연장 가능	
채용 요건	국가	관련 분야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요건 충족
	지방	관련 분야에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시험 위원	국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선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지방	임용권자가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시행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서류 전형	국가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구성 - 5명 - 자부처 공무원 2명 이내 위촉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2명 이상 위촉 -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 5명 이상의 시험위원 - 시험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2명 이상 위촉 - 1/2 이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분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고위)공무원	일반 임기제 (고위)공무원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
면접 심사	국가	· 인사혁신처장이 중앙선발시험위원회 구성 - 5명 - 자부처 공무원 2명 이내 위촉 가능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지방	·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위원 임명·위촉 - 5명 이상의 시험위원 - 시험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임용	국 가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임 용후보자를 추천 → 역량평가 → 고위 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 소속 장 관이 임용 제청 → 대통령이 임용	· 역량평가 → 부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임용후보자 추천 → 고위공 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 소속 장관 이 임용 제청 → 대통령이 임용
	지방	· 선발시험위원회에서 2~3명의 임용후보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 → 인사위원회 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 용권자가 임용	·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통지 후 임용권자가 임용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미 2023년부터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보임.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2020년~2023년)>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고위공무원단	174	174	174	145
	과장급	295	299	301	228
	소계	469	473	475	373

주: 매년 연도말 현재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바.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

현행법 제43조제5항15)은 ① 중징계(파면·해임·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하 ‘제4호 사유’라 한다), ③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이하 ‘제6호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⑤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4호 사유 및 제6호 사유에 따른 직위해제(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제3호 사유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가 ①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4호 사유 및 제6호 사유에 따른 직위해제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원보충 기간을 단축하여 인사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가 현행 휴직 및 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연속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 보호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사. 부 칙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직위 해제에 따른 결원보충 및 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와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사람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

개 정 안

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중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중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제3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대하여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직위에 임용된 사람(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1)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안 부칙 제2조)

①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제1항)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되,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려는 안 제33조제6호의4 및 안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의 개정 규정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여 개정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¹⁶⁾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영구적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개정 시한 2024. 5. 31.)¹⁷⁾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단축(영구→20년)하는 법 개정 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리한 소급 적용에 해당함.

다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부여한 개정시한 내에

16)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함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시행 2019.4.17.)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7) 국가공무원법(2020헌마1181, 2022. 11. 24 선고/ 2020헌마 1605, 2023.6.29.), 지방공무원법(2022헌마 1276, 2023.6.29.)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법률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¹⁸⁾에는 개정시한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다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동 부칙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당사자의 신뢰 보호와 사회적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소급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동 결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임용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 내용(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 ▶ ①다양한 임용예정 직무, ②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무담임권을 ③영구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 충분히 달성 가능
- ▶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하도록, 2024. 5.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더 위헌적인 법적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예외적 결정)

18)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임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사회적 공익을 넘어서는 당사자의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시한 경과 이후 적용(안 부칙 제2 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시한 내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정시한 경과 시부터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법률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a) 해당 기간에 임용된 사람으로 이 법 시행일 전에 미성년 대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과 (b) 개정시한 경과(2024. 6. 1.) 전 임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에 미성년 대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법 개정시한 경과 시부터 개정법률 시행일까지의 법률공백 기간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¹⁹⁾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해당 범죄가 확정되어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자로 이들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특례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 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법률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측면이 있

19)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입법 조치로 보임.

(2) 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 및 수사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 등(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하는 규정은 단순위헌 임을 고려할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자료 요청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 시간을 위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안의 다른 부칙 규정들은 본칙이 개정될 경우 필요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